

1987년도 종축등록사업 추진방향

대가축개량부 차장 김 동 혁

< 목 차 >

- | | |
|----------------|--------------|
| 1. 종축의 등록과 중요성 | 5. 등록사업 추진체계 |
| 2. 개량목표 설정 | 6. 등록실시요령 |
| 3. 종축 등록계획 | 7. 교육계획 |
| 4. 등록대상 | |

1. 종축의 등록과 중요성

가축개량의 궁극적 목적은 가축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켜 사육자에게는 튼튼한 양축소득의 기반확립과 국가적으로는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축산물의 자급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개량의 기초가 되는 "혈통등록"과 심사와 검정사업을 고루 실시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선발·도태를 꾸준히 실시하여 품종별로 개량의 목적을 되도록 빨리 달성하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가축개량의 가장 기초과제인 "혈통등록"이란 가축개체에 따른 혈통·체형·능력의 기록 및 성적을 조사 정리하여 가축의 선발·도태 및 교배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가 곧 "등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축의 혈통등록은 어느 개인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과 공인성을 지닌 정부가 축산법에 의해 인정한 "등록단체"가 자주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부(父)·모(母)축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는 "폐쇄식" 등록과 부(父)·모(母)축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 품종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등록이 가능한 "개방식" 등록의 두가지 제도가 있다. 등록사업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 외국의 경우는 폐쇄식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만이 보유하고 있는 한우리든가 젓소와 같이 홀스타인이란 한 품종만을(혈통우로) 도입 증식하고 있는 경우는 개방식 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는 폐쇄식 등록을 병행 추진하

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혈통등록의 인식이 높아지고 보편화 되어갈 때에는 개량의 가속화를 위하여 폐쇄식 등록으로 전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발족한 1965년부터 1986년도 말까지의 등록현황을 보면 한우 148,429두를 비롯하여 육우·105,585두, 젓소 151,132두, 돼지 181,459두, 토끼 44,514두 총 631,119두를 실시하였으며 회원은 2,603명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등록사업의 확대 추진과 회원 증모를 꾀하여 명실공히 회원 협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진적인 인구증가와 국민 식생활 향상에 따른 축산물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자원활용의 제한성과 양축 규모의 한계성 및 농가 양축가로부터의 소득등을 고려하여 불 때 양축농가에 대한 기술경영의 개선과 단위당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개량사업은 쌀 자급 이후의 농정시책중 귀중한 정책과제로 지속적인 투자와 지도 계몽이 뒤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 때 가축의 개량사업은 축산정책 당국을 위시하여 시험장·종축장·축협·양축가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조하고 참여하여야 할 사업이기도 한 것이다.

2. 개량목표 설정

- 가. 한우 **역용(役用)** → **육용우(肉用牛)**
- 1) 체형: 체적균형과 자질품위의 향상
 - 2) 산육능력: 조사료 이용성향상과 산육능력의 제고
 - 3) 번식능력: 연산성(連産性)과 제일성(齊)

一性) 제고

4) 형질별 개량목표

항 목	현 재	목 표	비 율	비 고
도체중(kg)	450	560	124	
지육율(%)	58	60	103	
번식율(%)	75	80	107	

나. 유 우

- 1) 체형 : 유용 특징을 갖춘 한국형 체형
- 2) 산유량 : 산유량의 증가와 유질향상
- 3) 번식능력 : 연산성과 산자의 제일성 제고
- 4) 강건성 : 적응성, 내병성 제고와 경제년한 연장
- 5) 형질별 개량목표

항 목	현 재	목 표	비 율	비 고
번식율(%)	77	80	104	
산유량(kg)	4,800	5,500	115	

다. 돼 지

- 1) 체형 : 체구의 신장과 체적증대

- 2) 산육능력 : 상품가치 (육질의 제일화) 증대와 산육능력 향상

- 3) 강건성 : 지체를 강건히 하여 경제년한 연장

4) 형질별 개량목표

항 목	현 재 (1985년)	목 표 (1995년)	비 고
삼 자 수 (생존두수)	9.5 두	10.5 두	현재의 개량수치는 국립종축원의 자료임.
일당증체량(g)	840 g	870 g	
등지방두께(cm)	2.0 cm	1.8 cm	
사료요구량(%)	2.80	2.65	

(자료 : 농림수산부)

라. 토 끼

- 1) 체형 : 체적 증대
- 2) 산모 · 산육량 : 모질과 밀도 향상, 육량과 육질 향상
- 3) 번식능력 : 산자수 증가와 연산성 제고
- 4) 강건성 : 사료이용성 증대와 경제년한 연장

3. 종축등록계획

(단위 : 두)

구분 시도별	한 우			젖 소	돼 지	토 끼	계
	순수계통 번식지구	등록 확대지구	계				
합 계	4,500	24,000	28,500	12,000	22,000	1,500	64,000
대구					1,000		1,000
인천					1,000		1,000
경기	530	2,200	2,730	4,500	10,000	900	18,130
강원	500	2,350	2,850	1,000	500	50	4,400
충북	760	1,830	2,590	600	1,000	50	4,240
충남	430	3,110	3,540	1,650	2,000	300	7,490
전북	430	2,070	2,500	800	1,000	50	4,350
전남	510	3,310	3,820	1,200	3,000	50	8,070
경북	770	4,650	5,420	1,000	1,500	50	7,970
경남	570	4,430	5,000	1,200	1,000	50	7,250
제주	-	50	50	50	-	-	100

※ 제주도의 한우는 육우등록계획임.

4. 등록 대상

가. 한 우

- 1) 시·군 종축검사 합격우
- 2) 한우 순수계통 번식단지 생산우
- 3) 국·공립기관 보유축 및 생산 배부축
- 4) 축산진흥대회 출품우
- 5) 전·기업·목장 및 정부지원 입식우

나. 유 우

- 1) 회원농가 보유축 및 생산축
- 2) 국·도립종축원(장) 보유축 및 생산 배부축
- 3) 능력검정 실시우 및 그의 후대축
- 4) 수입정액 수정우 및 그의 생산축
- 5) 선형심사 대상축
- 6) 축산진흥대회 출품우
- 7) 수입우 및 그의 후대축
- 8) 외국에서의 수입정액 수정 대상축

다. 돼 지

- 1) 회원농가 및 종돈업 등록업체
- 2) 국·도립종축원(장) 보유돈 및 생산 배부돈
- 3) 축협 중앙회 종돈사업소 보유돈과 생산 배부돈
- 4) 능력검정(검정소 검정·농장검정)합격돈
- 5) 혈통이 확인된 수입종돈 및 임신 수입종돈에서 생산된 자돈, E·T돈

라. 토 기

- 1) 국립종축원 보유토 및 생산 배부토
- 2) 회원 및 양토조합 회원농가의 보유토와 생산 자토
- 3) 기타 전·기업 양토장의 보유토의 생산 자토

5. 등록사업 추진 체계

가. 한 우

- 농림수산부: 종축검사와 등록계획수립시달
- 각시도, 축협, 종축원(장), 시험장, 한국종축개량협회
- 각시도: 각시군, 가축별 종축검사 및 등록두

수 배정

- 각시군, 축협축산 기술직: 종축검사실시와 우량우 선발등록 신청 - 한국종축개량협회
- 한국종축개량협회: 시·도·군, 축산직 및 축협축산기술직에 대한 심사기술교육과 등록요령 교육실시(종축검사 시행전-매년 3월중)
 - 종축등록증명서 발급 및 기록보관
 - 한우순수계통번식단지 지도원 및 농민교육 실시
- 양축농가: 종축검사 및 등록사업 참여

나. 유 우

- 농림수산부: 유우등록계획수립 시달
- 각시도, 축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 시·도: 각시·군별 등록두수 배정
- 한국종축개량협회: 국립종축원 및 각도 종축장과 유우등록 협조
 - 단체회원(서울우유조합, 부산 경남우유조합, 성환낙농조합)에 대한 기술, 지도교육 실시
 - 각 유업체 및 지역낙우회와 협조하여 농가교육 및 지도사업 전개
 - 양축농가의 혈통, 심사, 검정성적 컴퓨터 입력보관
- 양축농가: 유우등록, 심사, 검정사업 참여

6. 등록실시요령

가. 한 우

- 1) 등록대상축의 선발
 - 가) 한우개량의 기초우군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축검사 합격우를 등록토록 한다.
 - 나) 등록대상축은 실력조건이 없고 종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를 선발토록 한다.
 - 다) 등록대상농가는 개량에 대한 인식이 높고 등록우를 장기간 사육할 수 있는 번식농가를 우선하여 선정토록 한다.
 - 라) 대상우의 선발은 가급적 자연부락 단위로 인공수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으로 선정토록 한다.
- 2) 등록시의 협조사항

가) 행정계통 : 등록물량 배정과 등록위원 동원 및 등록일정, 장소 선정을 하며 대상우의 출장독려와 등록참여를 한다.

나) 축협계통 : 지역별에 대한 등록사업의 지원과 협조를 한다.

다) 관련기관 : 국립종축장(원) 및 시험기관과의 유대강화로 사업효과의 파급과 인식도를 제고시킨다.

3) 등록의 종류

가) 기초등록 : 6개월령 이상의 한우로서 심사점수 암소 70점, 수소 75점 이상을 받은 소 (부·모 모를 때)

나) 혈통등록 : 등록우간에서 생산한 송아지로서 실격조건이 없는 것으로 분만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다) 보통등록 : 혈통등록을 한 소가 24~36개월령이 되었을 때 심사를 하여 암소는 75점 수소는 78점 이상의 득점을 받은 소.

라) 고등등록 : 보통등록우간 이상에서 생산한 송아지로 혈통을 마치고, 암소는 30개월령이상에서 심사점수 80점 이상의 혈통등록우 2두이상 생산시와 수소는 검정성적이 우수하고 혈통등록우 10두이상 생산한 소를 확보한 소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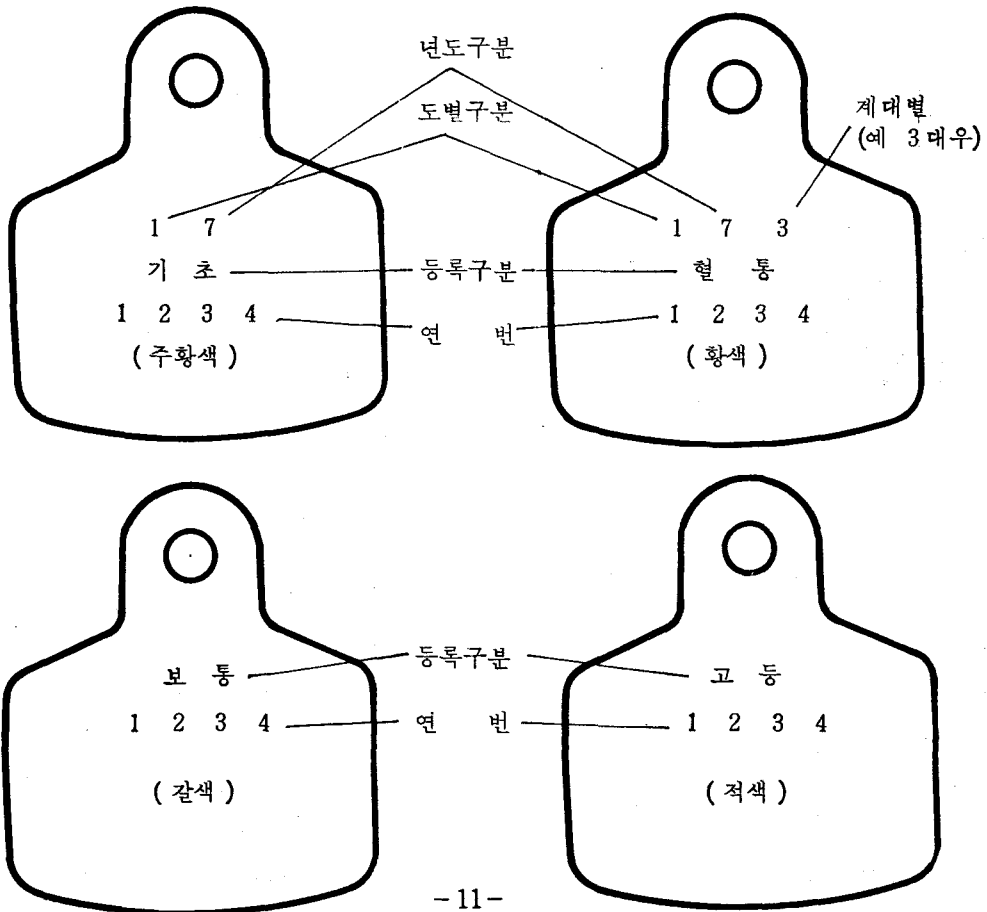
4) 등록위원의 구성

사업지구 시·군의 지방등록위원으로 1개반 2명(1명은 체척측정, 1명은 기록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5) 등록증명서 발급

등록우로 확정된 소는 지방등록위원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통보하며 본회는 등록신청에 의거 전산처리 하여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 해당 시·군에 송부한다.

한우등록구분별 이표모형



6) 등록우의 이표부착

등록이 확정된 소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위 모형과 같이 개체번호가 기입된 이표를 오른쪽 귀에 부착하여 일반우와 식별토록 한다.

7) 등록료의 징수

등록이 확정된 소는 이표 부착과 동시에 등록표를 징수(등록위원이 징수)하여 사업종료와 동시에 본회로 송금하며 이때 등록위원 수당 30%를 지급(공제)한다.

8) 등록우의 관리

등록이 확정된 소는 본회에서 사업지구별로 한우관리대장(아래참조)을 작성하여 각 시·군별로 비치토록 하며 사업시군은 본대장을 적극 활용

하여 등록우에 대한 이동, 폐사, 수정 및 임신등의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사후관리에 입하도록 한다.

9) 제반신고의 이행

등록우의 사육농가중 등록우가 이동되었거나 폐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시군에 신고하여 시군의 관리대장을 정리한후 본회에 통보토록 하며 이동된 소에 대하여는 발급된 등록증과 함께 본회에 송부하여 이동사항에 대한 기록을 하여 이동증명을 받아야 하며 폐사시에는 본회에 신고하여 등록대장에 폐사 사항을 기록 정리 보관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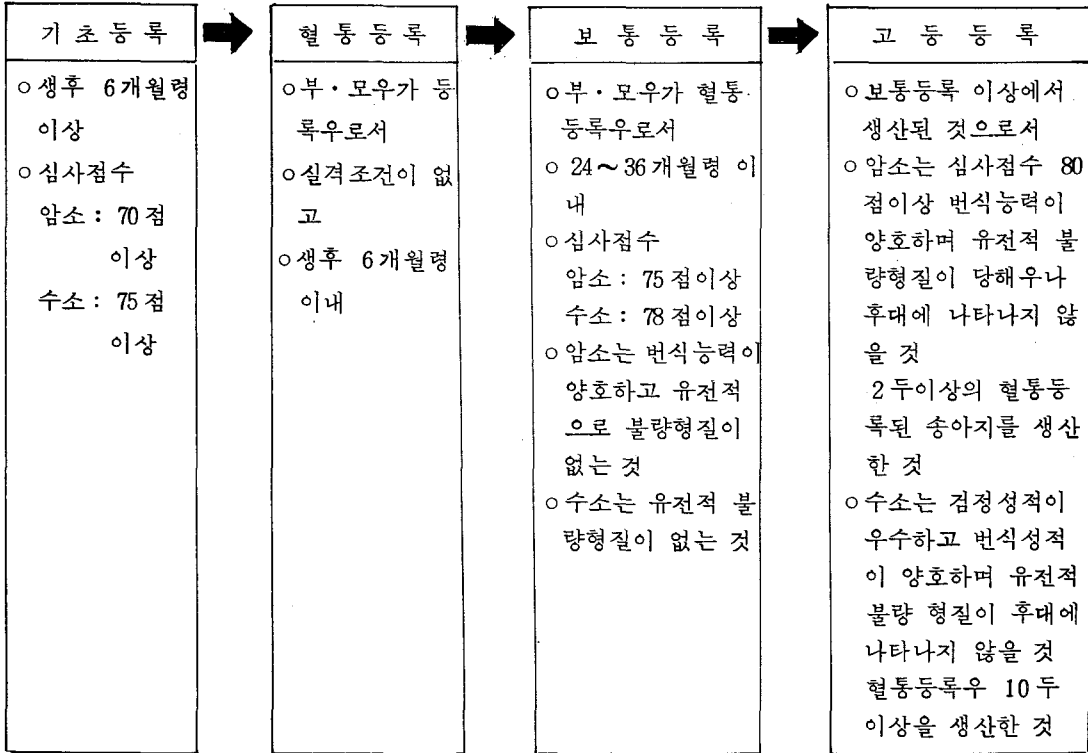
등록우 관리대장

연번	등록년월일	등록번호	성별	명호	소유자주소	성명
산차	분만년월일	성별	부명호	이동년월일	양수인주소	성명

군

연번	등록년월일	등록번호	성별	명호	사육자		번식관계			이동사항			양수인	
					주소	성명	분만일	사생	우산	이년월일	동종	이동종류	주소	성명

한우등록종류별 설명도



나. 유 우

1) 등록대상축의 선발

가) 제대등록의 추진을 위하여 능력검정우와 선형심사대상우를 중심으로 선발 등록토록 한다.

나) 등록대상축은 실격조건이 없고 종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우를 선발하며 회원중심으로 실시토록 한다.

다) 대상우의 선발은 낙우회의 조직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 등록시 협조사항

등록사업협조단체와 지방등록위원의 유대강화를 꾀 조직적인 등록을 유도하도록 한다.

3) 등록의 종류

홀스타인젖소 등록에 있어 우리나라는 다른 많은 나라와 같이 개방식등록제도를 채용하고 있

다. 혈통(父·母)을 알 수가 없더라도 기초등록을 하였다가 점차로 그 후대가 혈통이 확립되어 나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등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기초등록

① 등록된 홀스타인 수소와 등록이 안된 홀스타인종의 암소에서 생산된 소로서 홀스타인종의 특성을 지닌 소

② 홀스타인종으로 개량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 (이경우도 홀스타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함)

나) 본등록

① 혈통등록된 홀스타인의 종모우나 기초등록된 암소에서 생산된 것

② 기초등록한 홀스타인종의 산유능력 검정성적 및 외모심사성적이 기준이상인 것

다) 혈통등록

- ① 혈통등록된 부모에서 태어난 것
(한편 적백반우의 등록은 혈통등록에 한하여 실시하며, 이름뒤에 "적" (Red)라 표시한다)
- ② 본협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홀스타인 등록단체에서 혈통등록되어 수입한 것
- ③ 혈통등록한 암소에 수입한 정액으로 수정하여 생산된 것
- ④ 혈통이 확인될 수 있는 혈통등록우간의 수정란에서 생산된 것
- ⑤ 혈통등록된 종모우와 본등록된 암소에서 생산된 암소로서 산유능력검정성적 및 외모 심사점수가 기준이상인 것

라) 고등등록

혈통등록우로서 생후 24개월 이후의 외모심사성적이 76점 이상이고 산유능력검정 요령에 따른 산유능력이 기준이상인 것

4) 등록위원의 참여

국가 및 민간유관기관의 실무자로 위촉된 등록위원과의 유대강화로서 확대등록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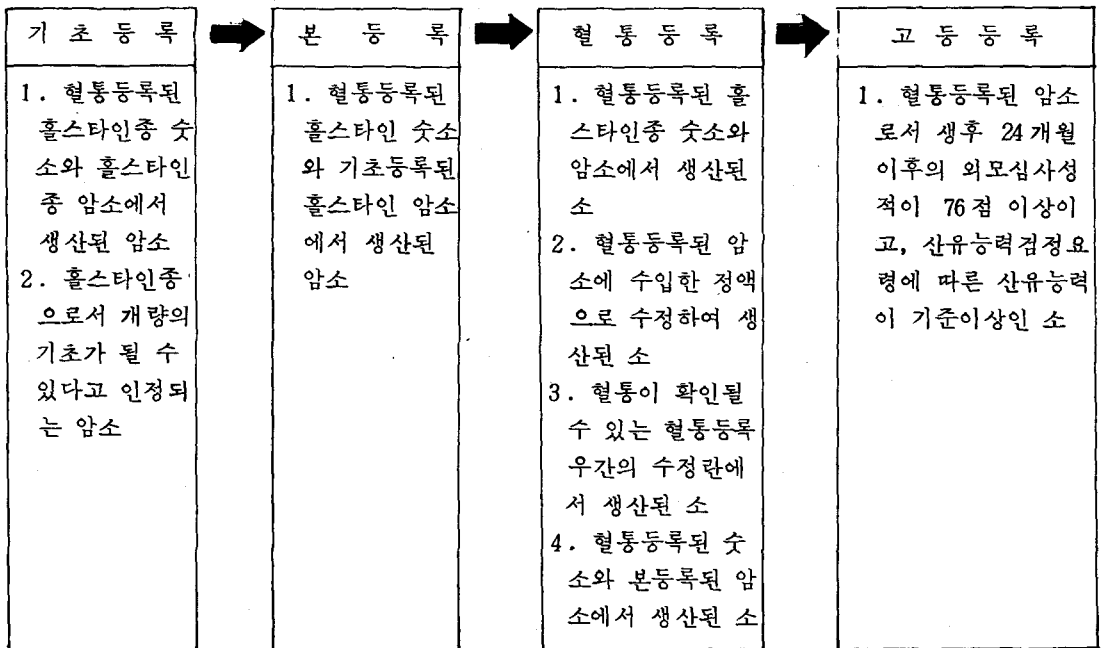
5) 등록증명서 발급

등록우로 확정된 소는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전산처리 되어 지방등록 위원 및 신청자에 발급 송부한다.

6) 등록우의 관리

등록된 소는 분회 전산기에 입력되며 기록과 성적을 분석하는 동시 변동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등록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유우등록 종류별 설명도



※ 상기 모든 젖소는 홀스타인종의 모색 및 특징을 가져야 하며, 등록에서 제외되는 결격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전신이 백 또는 흑색의 단일색인 것
2. 혼합모를 가진 것
3. 미방 또는 복부가 흑색인 것
4. 일지라도 제관부가 흑모로 둘러싸인 것
5. 선천성 맹목, 단제등 생리기능을 현저하게 손상하는 유전적 결함이 있는 것

종돈 등록종류별 설명도

혈통등록	본등록	번식능력등록	고등등록
<p>등록의 대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돈은 그 품종의 특징과 형질을 구비하고 자질이 양호한 돈으로서 심사를 받아 합격한 것은 혈통등록을 할 수 있다.</p> <p>1. 혈통등록, 본등록, 번식능력등록 및 고등등록된 종돈(수정란 및 수정입액 포함)에서 생산된 것</p> <p>2. 본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등록기관에서 등록된 돈</p> <p>등록의 신청 : 혈통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혈통등록신청서에 등록자격의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 1호의 경우는 부모의 혈통(본등록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다만, 인공수정의 경우 모의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수정증명서)</p> <p>2. 제 2호의 경우는 본회가 인정한 외국의 등록단체에서 발급한 혈통등록증명서</p>	<p>등록의 대상 : ① 혈통등록된 종돈으로 생후 12개월 이후에 외모심사한 성적이 70점이상인 것 ② 다만, 종돈능력검정(농장검정 포함)에 합격한 종돈에 대하여는 직접 본등록을 실시할 수 있다.</p> <p>등록의 신청 : 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본등(본)신청서에 혈통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등록의 대상 : ① 본등록이 된 종빈돈으로서 종빈돈 산자검정요령에 따라 번식능력을 검정하여 이에 합격한 것은 번식능력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본등록이 된 종모돈으로서 서로 다른 3두이상의 종빈돈에 교배하여 생산된 종돈중에서 5두 이상의 번식능력등록돈을 생산한 돈은 번식능력등록을 할 수 있다.</p> <p>등록의 신청 : 종돈의 번식능력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번식능력등록신청서에 본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등록의 대상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돈은 고등등록을 할 수 있다.</p> <p>1. 생후 12개월 이후에 실시한 외모심사 성적이 75점 이상인 것</p> <p>2. 종빈돈은 번식능력등록돈으로서 초산 수태시 24개월 이후에 3회이상 종빈돈 산자검정에 합격한 것</p> <p>3. 종모돈은 서로 다른 5두이상의 종빈돈에 교배하여 생산된 종돈중에서 20두 이상의 번식능력등록이 된 것</p> <p>등록의 신청 : 종돈의 고등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고등등록신청서에 번식능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다. 돼 지

1) 등록대상축의 선발

가) 국도립축육원(장)과 축협종돈사업소 및

종돈능력검정소에서 선발된 돼지를 종돈으로 선발 등록한다.

나) 회원업체 및 종돈업등록을 한 업체에

서 생산된 자돈을 주축으로 심사 선발하여 등록하고 종돈군이 핵군화되도록 유도한다.

2) 등록의 종류 - 등록종류별 설명도 참조

3) 등록위원의 참여

종축생산기관에서 생산된 자돈에 대하여는 국도립종축원(장)과 기타 협조단체에 위촉된 등록위원의 협조로서 등록을 추진토록 한다.

4) 등록증명서 발급

등록위원이 심사 선발하여 등록 신청한 것과 본회 직원이 종돈장을 순회 심사하여 합격된 종돈을 전산 처리하여 소유자에게 발급 송부한다.

5) 등록돈의 관리

등록돈의 혈통과 능력을 전산입력하여 부모 및 조부모의 혈통과 능력이 등록증명서에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여 외모에 의한 선발등록에서 점정에서 확인된 유전형질에 대한 능력을 재평가토록 하며 자농장 돈군이 정예화되도록 유도하고 돈군의 능력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형질 개량이 되도록 제도한다.

라. 토 기

1) 등록대상축의 선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종토와 생산 자토 및 양토장의 보유 종토중 실적 조건이 없는 것으로 품종별로 선발한다.

2) 국립종축원의 생산 자토중 분양자토에 대한 선발등록을 한다.

3) 등록의 종류

가) 기초등록: 품종의 특징을 구비하고 발육이 양호하며 형질이 정상적인 것과 본회가 인정하는 수입종토

나) 혈통등록: 동일 품종의 등록토간에서 생산한 자토로서 품종의 특징을 구비하고 형질이 양호한 것과 본회가 인정하는 수입종토중 혈통등록을 한것

4) 등록위원의 참여

국공립기관은 위촉된 등록위원이 담당 실시하며 기타 종토장은 본회 직원이 현지 순회심사후 실시한다.

7. 교육계획

등록사업 관련기관의 실무자(등록위원)에 대한 심사·등록요령 및 실기 그리고 양축농가의 개량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한우,유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지양하고자 한다.

가. 한 우

1) 실시요령

자도와 축협도지부의 협조로서 사업관련실무자(등록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일정교육 이수자에게는 등록위원증을 교부하여 등록요원화 하여 지방등록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며, 교육방법은 자도별로 순회 실시하되 일정에 따라 이론과 실기를 병행 실시한다.

2) 교육계획

등록위원 교육 계획

도 별	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석인원	교육담당관	비 고
경 기	'87.3.17	경기도 종축장	34	회장 송찬원	
강 원	3.18	강원도 "	22	차장 김동혁	
충 북	3.19	충북도 "	24		
충 남	3.20	충남도 "	20		
전 북	3.24	전북도 "	49		
전 남	3.25	전남도 "	24		
경 북	3.27	경북도 "	38		
경 남	3.26	경남도 "	42		
계			253		

나. 유 우

국공립 종축생산기관 등록사업협조단체 유우능력검정소의 실무자(등록위원)와 낙농가를 중심으로한 지역단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방

법을 유우개량과 심사 등록 및 계획교배방법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인식 수준을 제고 시킴과 아울러 사업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